

연계신용거래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간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연계신용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대출금융기관 :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제 3 의 금융기관으로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 서비스 : 고객이 회사에 개설된 고객명의로 위탁계좌(이하 "서비스 신청계좌") 내의 자산을 "대출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회사가 대출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담보력을 계속적으로 체크 및 관리하고 질권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계신용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 : 고객의 사전 동의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매매 가능하도록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 신청계좌 내 자산의 질권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수가능 종목 등을 제한하고 담보 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대출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서비스 관련 계약 등 : 대출금융기관과 고객간, 회사와 고객간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계약,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 사전 합의 등을 말하며, 예컨대 대출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대출계약 및 질권설정계약, 고객의 대출금융기관 내지 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등을 말합니다.
5. 질권 : 이 약관에서의 "질권"이란 서비스 신청계좌내에 있는 주식 등 증권 및 예탁금에 대하여 설정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6. 반대매매 : 제 3 호의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사전 동의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질권의 대상이 된 주식 등 증권이 자동으로 처분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신청)

- ① 고객은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신청계좌는 내국인 개인 고객 명의의 위탁계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③ 서비스 신청 후에는 위험관리를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 고유의 신용 대출 등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 신청계좌에 대출금을 입금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과 별도로 "대출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한 매수제한)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고객의 HTS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예와 같이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매수가 제한되는 종목에 관하여는 고객의 매수 주문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1. 관리종목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4. 권리락(현금배당락) 종목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6. 감자/합병 종목
7. 시가총액 50 억 미만(전일기준) 종목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종목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11. 최근 7 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12. 이유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13. 보호예수 해제 후 5 영업일 이내 종목
14. 5 일 평균 거래량 1,000 주 미만 종목
15.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제 5 조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유불가종목의 설정 등)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고객이 동 약관과 별도로 대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자문서에 동의한 종목(또는 동의 조건에 맞는 종목)을 보유불가종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보유불가 종목을 보유하게된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정한 바에 따라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서비스 신청시 대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자문서에 나열된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 (질권의 설정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 ① 고객은 대출금융기관을 질권자로 고객을 질권설정자로 하는 질권설정신청서를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대출금액의 100 분의 120 이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담보비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담보비율은 [(매매체결기준일) 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X 100% 로 산정합니다.

제 7 조 (추가담보의 제공 등)

- ① 고객은 담보가액의 총액이 대출금융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비율”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출금융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담보의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약된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 등을 제 3 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 고객계좌에 예약되어 있는 현금으로 연계신용 대출채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납입기일 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② 전항 각호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의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반대매매순서에 따릅니다.
- ④ 제 1 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제 9 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 등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에 따라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제 10 조 (대출금융기관의 출금 청구)

회사는 고객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 기타 지연손해금 등(이하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 등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서비스 신청계좌 내의 예수금에 대하여 해당 대출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융기관의 출금청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대출금의 상환)

- ①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유지비율 위반에 의한 대출 원리금의 상환시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의 위반여부를 회사의 영업일(매도체결된 경우에는 매도 결제일) 15 시 30 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환처리합니다.
- ② 만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 등에서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신청계좌에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전액을 인출 가능한 예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된 경우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종료하며 신청계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대출금융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여 고객 신용정보를 대출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고객정보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 14 조 (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 상 공지의무)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이용에 대한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등 연계신용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 회, 반대매매 당일 오전 1 회, 반대매매처리 후 1 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면책)

-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고객의 귀책사유
 3. 고객이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17 조 (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0 조 (관계법규 등의 적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서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1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2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6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 년 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 년 8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